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3-120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마포복지목욕탕이 운영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폐지하여 법령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나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3. 8. 24. ~ 9. 13.(20일)

▶ 제출된 의견 없음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결과 : 원안의결(2023. 9. 2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 : 복지동행국 장애인동행과 이덕경 (☎ 1682)